응시자 준수사항

□ 답안지 작성요령

※ 다음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되므로 기재된 내용대로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1. **득점은 OCR 스캐너 판독결과에 따라 산출합니다.** 모든 기재 및 표기사항은 **"컴퓨터용 흑색 사인펜"**을 **사용**하여 **반드시 <보기>의 올바른 표기 방식으로 답안을 작성**해야 합니다. **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(득점 불인정 등)은 응시자 본인 책임입니다.** **특히, 답란을 전부 채우지 않고 점만 찍어 표기**한 경우, **번짐 등으로 두 개 이상의 답란에 표기**된 경우, **농도가 옅은 컴퓨터용 사인펜을 사용하여 답안을 흐리게 표기**한 경우 등에는 불이익(득점 불인정 등)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   <보기> 올바른 표기 : ● 잘못된 표기 : ✓ ⊗ ◑ ⊙ ◍ ◎ ⊙ ③

2. 답안지를 받으면 먼저 **좌측 및 상단 굵은선 내에** 다음 사항을 빠짐없이 **"컴퓨터용 흑색 사인펜"** 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.
   - 답안지를 교체한 경우에는 반드시 상단 기재(표기)사항을 빠짐없이 **본인이 직접 작성**(표기)하여야 하며, 작성된 답안지는 **1인 1매만** 유효합니다.(교체 전 답안지는 폐기처리 됨)

   가. 책형
   - **시험 시작 후** 문제책 표지에 인쇄된 책형을 확인한 다음, 답안지 문제책형란의 해당 문제책형을 기재하고 "●"로 표기하여야 합니다.

   나. 필적감정용 기재
   - 예시문과 동일한 내용을 본인의 필적으로 아래 빈칸에 기재하여야 합니다.

   다. 성명
   - 본인의 한글성명을 **정자로 직접 기재**하여야 합니다.

   라. 임용대상기관
   - 본인의 응시표상의 임용대상기관을 기재하여야 합니다.
   ※예시 : 서울지방우정청, 경인지방우정청

   마. 시험장소
   - 본인이 응시하는 학교명을 기재 ※예시 : 덕수중학교

   바. 응시번호
   - 위 칸에는 **아라비아숫자**로 기재하고 아래 칸에는 "●"로 표기

   사. 생년월일
   - 위 칸에는 **아라비아숫자**로 기재하고 아래 칸에는 "●"로 표기

   아. 취업지원 대상 가산표기란(추후 **증빙서류를 제출**하여야 합니다.)
   - 해당되는 수험생에 한해 해당란에 "●"표기

3. 시험이 시작되면 **문제책 편철이 표지의 과목순서와 맞는지 여부, 문제지 누락, 인쇄상태 및 파손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문제책형을 답안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.**
   - **답안은 반드시 문제책 표지의 과목순서에 맞추어 표기하여야 함**(과목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경우에도 **문제책 표지의 과목순서대로 채점**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)

4. 답안은 매 문항마다 반드시 **하나의 답만**을 골라 그 숫자에 "●"로 표기해야 하며, **답안을 잘못 표기하였을 경우에는 표기한 답안을 수정하거나 답안지를 교체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.**
   - 표기한 답안을 수정하는 경우에는 **응시자 본인이 가져온 수정테이프만을 사용**하여 해당 부분을 완전히 지우고 부착된 수정테이프가 떨어지지 않도록 눌러주어야 합니다.**(수정액 또는 수정스티커 등은 사용 불가)**
   - **불량 수정테이프의 사용과 불완전한 수정**처리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**문제**는 **응시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**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

5. 답안지는 **훼손, 오염되거나 구겨지지 않도록 주의**해야 하며, 특히 **답안지 상단의 타이밍 마크(▮▮▮▮▮)를 절대 훼손해서는 안됩니다.**

□ 부정행위 등 금지

※ 다음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(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)에 따라 그 시험의 정지, 무효, 합격취소, 5년간 공무원임용시험 응시자격 정지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.

1. 시험시작 전까지 문제내용을 보아서는 안됩니다.
2. 시험시간 중 일체의 **통신기기**(휴대폰, 태블릿PC, 스마트시계, 스마트밴드, 이어폰 등) 및 **전자기기**(전자계산기, 전자사전 등)를 **소지할 수 없습니다.**
3. **응시표 출력사항 외 시험과 관련된 내용이 인쇄 또는 메모된 응시표를 시험시간 중 소지하고 있는 경우 당해시험 무효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,** 특히 부정한 자료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**5년간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격 정지 처분**을 받을 수 있습니다.
4. **시험종료 후에도 계속하여 답안지를 작성하거나, 시험감독관의 답안지 제출 지시에 불응할 경우에는 무효처분을 받게 됩니다.**
   - 답안, 책형 및 인적사항 등 모든 기재(표기) 사항 작성은 시험종료 전까지 해당 시험실에서 완료하여야 하며, 특히 답안지 교체 후 누락되는 항목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5. 답안 기재가 끝났더라도 시험종료 후 **시험감독관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퇴실할 수 없으며, 사용한 모든 답안지는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.**
6. 그 밖에 **공고문의 응시자 준수사항**이나 **시험감독관의 정당한 지시 등**을 따르지 않을 경우 부정행위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.